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. 11. 26 선고 2024가단1192 판결 [건물명도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1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1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9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3. 피고는 원고에게 2024. 8. 4.부터 1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5. 제1., 2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[주문 제2.항의 경우 2024. 11. 25.자로 정정(감축)되었다]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국식

별지